

부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9. 19.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9. 27.

라. 상정 및 의결 :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97. 9. 27.)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박광천)

가. 제안이유

- 간부단원 중 기획담당자의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의 전형응시자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나. 주요골자

-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
-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조정(안 제6조제1항)
 - 현행 : 전형응시자격을 만 35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
 - 개정 : 55세 이하로 규정
- ※ 제6조 및 제8조가 불부합하여 개정
-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 (안 제16조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단무장과 기획담당의 호칭변경 차이는?	○ 현재 모든 예술단체가 단무장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 관제6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해 시장이 위촉시 정실인사의 우려는 없습니까?	○ 정실인사의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인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의안번호	제307호
의결년월일	97. 9. 30. (제55회)

제출년월일:97. 9. 30.

제 출 자: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단원의 선발에 예외규정인 단서조항을 삽입할 시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예방코저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음

2. 주요골자

개정안 제6조제2항중 “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삽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생략)</u></p> <p>1. 생략</p> <p>2. <u>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의 전형응시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남·여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u>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현행과 같음)</u></p> <p>1. 현행과 같음</p> <p>2. <u>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중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감독의 추천과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u></p>	<p><u>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 (개정안과 같음)</u></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97. 9. 19.

제 출 자: 부천시장

제안이유

- 간부단원 중 기획담당직의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의 전형응시자격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

주요골자

-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1항)
- 단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 조건(안 제6조제1항)
 - 현행 : 전형응시자격을 만 35세 이하의 남녀로 제한
 - 개정 : 55세 이하로 규정
- ※ 제6조 및 제8조가 불부합하여 개정
- 문화공보부를 문화체육부로 변경(안 제16조제2항)

[수정안포함]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기획담당”을 “단무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를 “4년제 정규대학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상의”로 한다.

2. 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제6항중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찬성으로 한다.”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한다.”를 “찬성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문화공보부관람료징수기준”을 “문화체육부관람료징수기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생략)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제1악장, 제2악장 및 <u>기획담당</u>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제1수석단원 14명, 제2수석단원 14명, 일반단원 5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제1수석단원의 결원이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량이 우수한 단원 중에서 제1수석대행자를 둘 수 있다.	1. <u>단무장</u>

현행	개정안
<p>2. 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u>기획담당</u>, 반주자,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수석단원 4명, 일반단원 61명 이내로 구성한다.</p>	<p>2.<u>단무장</u>.....</p>
<p>3. 무용단은 안무자, 훈령장, <u>기획담당</u>,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1명 이내로 구성한다.</p>	<p>3.<u>단무장</u>.....</p>
<p>4. 청소년관현악단은 지휘자, <u>기획담당</u>, 연습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4.<u>단무장</u>.....</p>
<p>5. 청소년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u>기획담당</u>, 성악지도, 안무지도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사무단원 1명, 비상임단원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5.<u>단무장</u>.....</p>
<p>②~③(생략)</p>	<p>②~③(현행과 같음)</p>
<p>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생략)</p>	<p>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u>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의 전형응시자격은 만 35세 이하의 남·여로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u>단원(간부단원 및 사무단원 제외)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각 단체별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p>
<p>3~4(생략)</p>	<p>3~4(현행과 같음)</p>
<p>②가 예술단체에서는 단원정수 범위 내에서 비상임단원을 둘 수 있으며, <u>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에서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u> (단서생략)</p>	<p>②<u>4년제 정규대학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상의</u> (단서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생략)</p> <p>제9조(운영위원회) ①~⑤(생략)</p> <p>⑥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⑦(생략)</p> <p>제10조(전형위원) ①~②(생략)</p> <p>③전형위원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한다.</p> <p>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u>문화공보부</u> 관람료징수기준에 의한다.</p> <p>③~④(생략)</p>	<p>③(현행과 같음)</p> <p>제9조(운영위원회) ①~⑤(현행과 같음)</p> <p>⑥.....<u>찬성으로 한다.</u></p> <p>⑦(현행과 같음)</p> <p>제10조(전형위원) ①~②(현행과 같음)</p> <p>③.....<u>찬성으로 한다.</u></p> <p>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협연료의 수입) ①(현행과 같음)</p> <p>②.....<u>문화체육부</u> <u>관람료징수기준</u>.....</p> <p>③~④(생략)</p>